



## 에이스가정종합보험<> 상품요약서

### 1. 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 가. 가입자격 제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 사고발생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판매제한 : 2009년 8월 1일 이전 자동갱신 첨부 계약의 갱신 계약에 한해 판매함**

\*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판매금지에 관한 사항

- ① 대상자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 ② 판매금지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 나. 상품의 특이사항

1)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재산손해(화재, 벼락, 폭발, 파열손해) 및 상해손해, 배상책임담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제 3자 배상책임 뿐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손해까지 담보하는 가정을 위한 종합보험입니다.

2) 이 상품의 보험기간 (보험회사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통상 1년이며(최대 3년), 보험료 납입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주기            |
|--------|---------------------|
| 1년     | 일시납, 2회납, 4회납, 12회납 |
| 2년, 3년 | 일시납                 |

3)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 가. 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 지급사유

| 구분 | 담 보  | 내 용                                                                         |
|----|------|-----------------------------------------------------------------------------|
| 기본 | 재산손해 | 건물 및 집기, 동산 등의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 및 이에 따른 소방손해와 피난손해를 건물, 동산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    |                    |                                                                                                                                                                                                       |
|----|--------------------|-------------------------------------------------------------------------------------------------------------------------------------------------------------------------------------------------------|
|    | 신체손해               | <p>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보험기간중에 상해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1년 이내에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망시에는 가입금액 전액, 후유장해시에는 약관상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가입금액의 3 ~ 100%를 지급.</p> <p>상해의료비 : 상해사고로 피보험자가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를 지급.</p> |
|    | 배상책임손해             |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피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단, 1사고당 300만원을 한도로 함.                                                                                           |
| 특약 | 상해 소득보상금           | 상해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    | 상해 입원일당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을 지급                                                                                                     |
|    | 질병사망 및 80%이상고도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에 정한 80%이상의 후유장해가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전액 보상                                                                                                                                       |
|    | 골프중상해 사망·후유장해      | 골프시설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                                                                                                                                     |

## 나.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1) 재산손해 :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의 80%이상 가입하였을 때에는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고, 80%미만 가입하였을 경우 손해액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으로 보상합니다.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 2) 상해후유장해 :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 3) 상해사망 :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 4) 의료비 :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 5) 배상책임 : 1사고당 300만원을 한도로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6) 상해소득보상금 :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소득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7) 상해입원일당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입원일당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8) 질병사망 및 80%이상고도후유장해 : 질병으로 사망시 또는 약관에 따른 장해분류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될 경우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 9) 골프중상해 사망·후유장해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후유장해보험금은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신체손해담보조항의 경우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함.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함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② 재산손해담보조항의 경우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자동차는 보험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는 가입증서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임 됨.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보험의 목적이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동결로 생긴 수도관 또는 수관의 파열로 인한 손해
- 지진, 분화, 해일로 인한 손해
- 보험의 목적인 가재가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에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 생긴 도난손해
-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안에 알지 못한 손해
- 피보험자의 고용인이 가담한 도난손해

#### ③ 배상책임손해담보의 경우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

####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나. 보험료 산출 예시

가입 예) 건물급수 1급 / 상해급수1급, 40세 남자, 월납

| 담보명  |                 | 보험가입금액  |
|------|-----------------|---------|
| 기본계약 | 화재,폭발,파열,항공기,차량 | 2,000만원 |
|      | 상해사망후유장해        | 2억원     |
|      | 상해의료실비          | 5백만원    |
|      | 배상책임            | 3백만원    |
| 선택계약 | 상해소득보상금         | 1억원     |
|      | 상해입원일당          | 5만원     |
|      | 질병사망            | 2,000만원 |
|      | 골프중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2,000만원 |
| 보험료  |                 | 24,840원 |

###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가. 해약환급금의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 1)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에이스손해보험

2)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